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096
----------	------

제출년월일 : 2006. 9. .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현대화된 유통시설에서 집하·선별·포장·저장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기능의 선진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와 유통정보의 수집·제공(안 제3조)
- 유통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함.(안 제7조, 제8조)
- 유통선진화 실천을 위하여 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허가 결정(안 제12조)
- 연간 사용료 결정 - 1000분의 10(안 제14조)

3.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2004.12.31 법률 제7311호]
- 농업·농촌기본법[개정 2003.12.11 법률 제6997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2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27호]
-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 2006. 5. 19 제7397호]

4. 의안전문 : 불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첨부 1. 근거법령(발췌분) 1부.
- 2. 입법예고 사본 1부.
 -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
(농업축산과-19023, 2005.12.6)
 - 4. 200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5권중제5권)
 - 5.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정 2006. 4. 25. 조례 제1865호]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식량작물·원예작물·화훼·채소·과수 등)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예냉, 저온저장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3.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기타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경영방법) 시장은 유통센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제천시 관내의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 및 농업경영체

2. 농산물유통전문회사

3. 제천시와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제5조(시설 설치·변경) ①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유통센터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수탁자가 유통센터 시설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원산지 표시 등) 유통센터에서 포장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서 정한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및 임기)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시의원, 유통센터 업무관련 과장과 유통센터 운영·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유통가공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센터 수탁자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
- 3.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위탁경영 및 관리

제1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시장은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월 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운영자는 서면으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등) ①유통센터의 연간 사용료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유통센터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위원회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14일의 기간을 주어 납입독촉 고지를 하고, 농협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④납입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한 것으로 보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한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한다.

⑤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부과금, 소득비, 냉·난방비, 차량·장비유지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 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센터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 ①운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연 2회 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시장은 유통센터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유통센터의 시설관리
2.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유통센터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
4.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보 칙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서						
법인· 단체	명 칭				법인번호	
	소재지	제천시	읍·면·동	리	번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시설명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건물	구조	면적(m ²)		용도	
	기타	구분	단위	수량	구분	단위
사용목적						
허가기간						
기타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311호]

第51條 (農水産物産地流通센터의 設置·운영 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水産物의 選別·포장·規格出荷·加工·販賣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農水産物産地流通센터를 設置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敷地確保 또는 施設物設置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 2003.12.11 법률 6997호]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5호]

제15조 (원산지의 표시)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2.8 대통령령 제19322호]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27호]

제14조 (사용료)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등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재

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사용 등은 제3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④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⑤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정 2006. 5. 19 제739호]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 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지역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천시 공고 제2006-989호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30일

제천시장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현대화된 유통시설에서 집하·선별·포장·저장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기능의 선진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와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제3조)
- 유통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함.(제6조, 제8조)
- 유통선진화 실천을 위하여 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허가 결정(제11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7월 2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 농업축산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 640-5572 FAX 640-5549 E-mail : hjc@okjc.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서번호	농업축산과 -19023
보존기간	3년
보고일자	2005. 12. 06.

★지방농업 주사	유흥가공당 당	농업축산과 장	소장	부시장	시장
유영복	박상순	김주현	지동현	이석표	12/06 엄태영
협 조	청사관리담당	서완용	회계과장	윤종철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추진계획



제 천 시 장
농업축산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추진계획

□ 목 적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 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선별, 저장, 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일괄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 추진방침

- 농산물의 집하선별, 예냉, 저온저장, 냉장수송 등 저온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농산물을 공동선별함으로써 균일품질의 농산물을 규격포장화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 기존시설과의 연합, 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의 확보를 전제로 지자체형을 시설 추진
- 준공후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자(남제천농협)확정후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 2006년(2년)
- 사업장소 : 제천시 수산면 적곡리 289-13번지 일원(4,525㎡)
- 사업량
 - 부 지 : 4,459㎡(1,350평)
 - 시설규모 : 180평정도(예냉, 저온저장시설외 2개사업)
 - 기계 및 장비류 : 선별기외 5종
- 총사업비 : 600,000천원
 - 부지매입비 : 200,000천원
 - 건축물 및 기계장비류 : 400,000천원
 - 건립비 : 312,400천원

- . 실시설계비 : 15,400천원
- . 감리비 : 4,800천원
- . 장비(기계.장치류)구입 : 65,000천원
- . 시설부대비 : 2,400천원

□ 일정별 추진계획

- 사업확정 : 2005. 02. 21
- 예산확보 : 600백만원
 - 제1회추가경정예산 : 2005. 04. 26(건물 및 기계장비류)= 400백만원
 - 제2회추가경정예산 : 2005. 04. 15(부지매입비)= 200백만원
- 지적분할 및 경계측량 : 2005. 10. 28
- 토지(부지)감정의뢰 : 2005. 11. 10
- 토지감정평가결과 회신: 2005. 11. 29
- 손실보상협의(내부결재):2005. 11. 30
- 토지보상 : 2005. 12월말
- 설계용역 : 2006. 01. 31
- 부지정리 : 2006. 02월말
- 건축 및 기계(장비)발주 2006. 07월말
- 준공 및 위탁운영 등 : 2006. 08월말

□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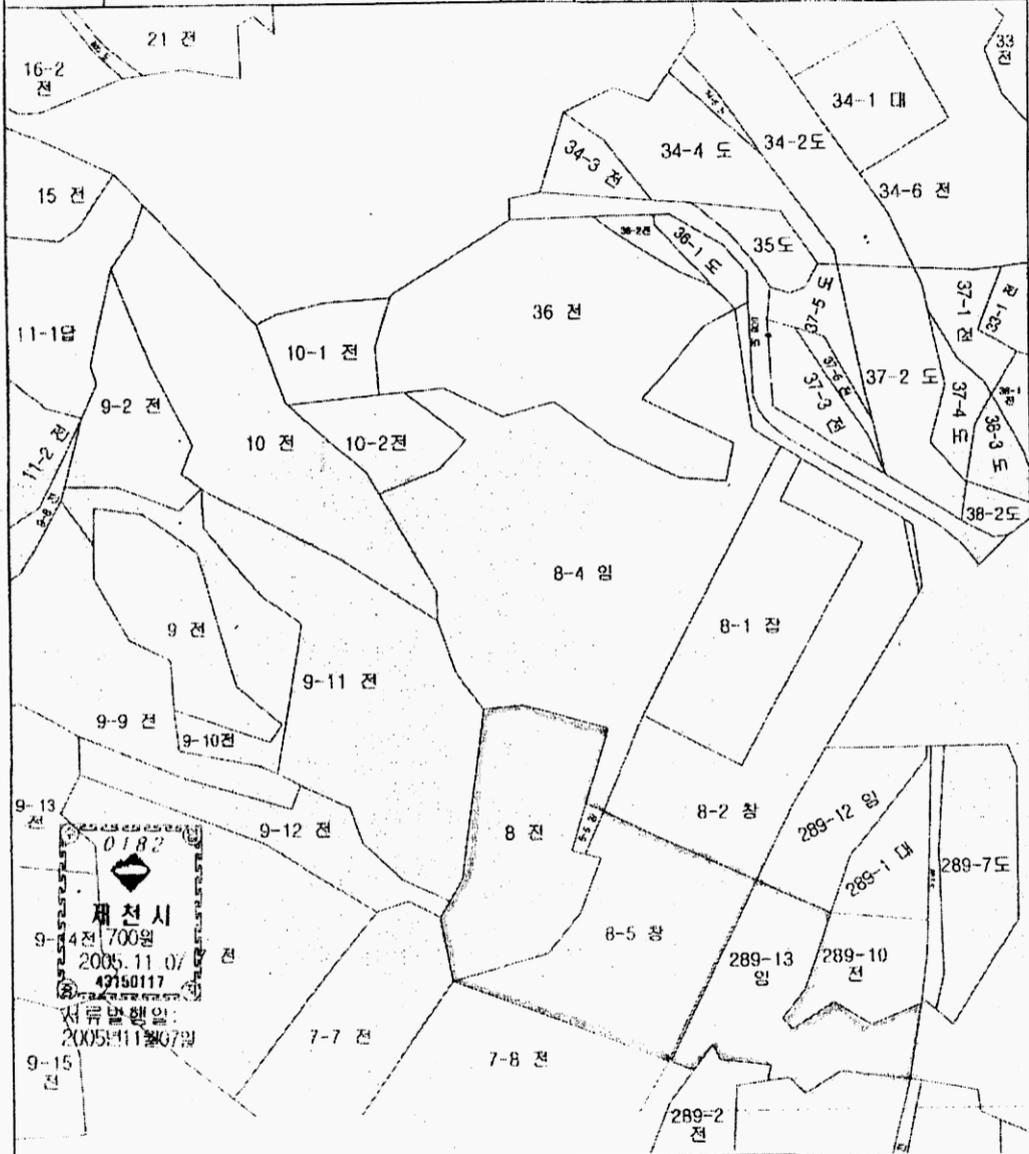
- 회계과장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설계 및 공사감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내역

구분	취득 재산의 표시				사업비	비고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계	4필지		4,459㎡	127,949	
	수산 적곡	289-13	임	1,197		제천시
	수산 내리	8-6	임	40		"
	수산 내리	8-5	창	1,685		"
	수산 내리	8	전	1,537		"
건물	계	3종		180평	296,000	제천시
	예냉.저온 저장고	1개소		50평		
	집하선별 포장장	1개소		100평		
	사 무 회의실	1개소		30평		
기계 장비류	계	5종			104,000	제천시
	선별기	대		1식	22,000	
	컨베어	식		1식	5,000	
	램핑기	대		1대	5,000	
	파렛트	개		200개	7,000	
	냉장탑차	대		1대	65,000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05 1107 0481-01	지리식각	15서 31장 31장	장면적	면적합 1
소재지	충청북도 재천시 수진면 내리	지번	8	종류	1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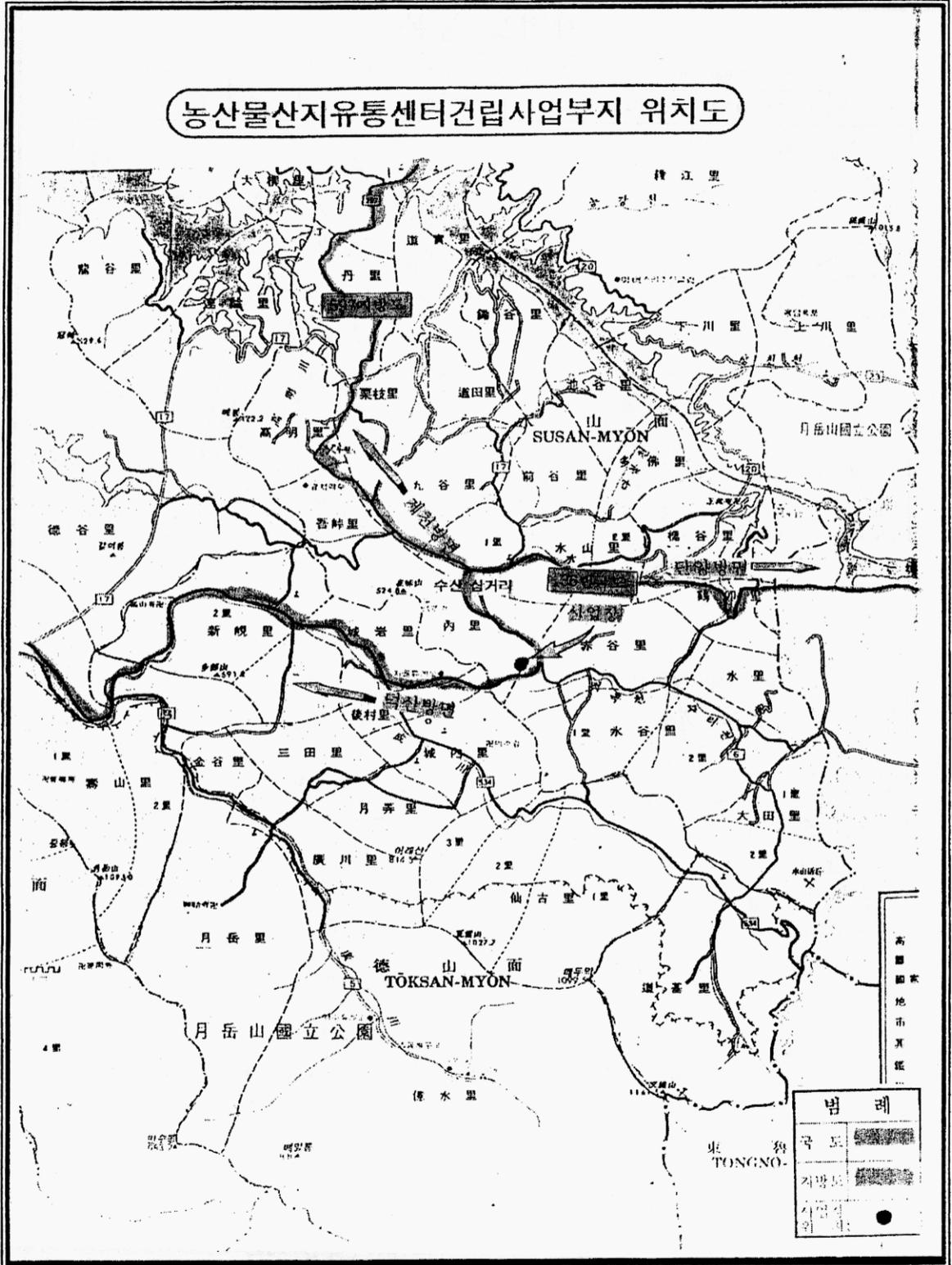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상권세 지번이 없습니다.

2005년 11월 07일

충청북도 재진시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부지 위치도



현 장 사 진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 수산면 내리 8번지 일원
 - 건축물 시설면적 : 180평
 - 장비 및 기계류 : 5종
 - 시설부지 : 4,525㎡ 정도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상급기관 검토사항

충청북도 원예유통과 4904호(2006.07.04)

항 목	초 안	검토사항	비 고
조례명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	붙여 쓰기
제4조 (경영방법)	①생산자 단체 적용에 대한 법규 미명시 ② 제천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없음	①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를 명시. ② (추가) 다만, 사정에 의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관련법 명시로 단체용어 정립 위탁운영자 미선정 시 자체운영방안 마련(위탁종료 등)
원산지 표시 등	규정 없음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포장출하 농산물은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을 명기	신뢰도 제고 (남원시 조례 참고)
제6조(설치) 제8조 (구성및임기)	내용상 동일사안을 분리 규정	조항을 "구성 및 임기"로 하여 규정을 통합 작성	내용 보완
제13조 (사용료 등)	사용료 미납부 및 지체납부에 대한 규정 없음	납기일 내 미납부 할 경우에 대비 규정마련 (독촉고지 및 지체납부 시 가산금 적용 등)	납부기일 준수

200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5권 중 제5권

2005. 12.

농 립 부

84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김현수, 사무관 김정주)입니다.

1. 목 적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
 - 농산물의 집하선별·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등 저온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농산물을 공동선별함으로써 균일품질의 농산물을 규격포장화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유통시설 투자 효율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APC지원 3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정·지원 및 지자체 책임하의 자율적 사업관리 강화

< APC지원 3원칙 >

원칙 1 : 先 조직화, 後 시설지원

- 농림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공동마케팅조직 및 전문조직(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고) 등 안정된 원료확보, 사업능력이 검증된 조직을 지원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기존에 활용중인 중소규모 유통시설 및 산지공판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비보완 및 확장을 우선추진하고, 사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중소규모 신규 APC 억제
 - * 거점 APC권역내 원료확보 경합이 가능한 중소규모 APC 신규지원 중단

원칙 3 : 지자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지원 및 관내 산지유통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및 신규시설간 경합여부, 통합조정 등 철저한 사업관리

- 지역 농업생산 전망, 기존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산지별로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 지원
- 기존시설 보완은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상품화 및 마케팅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산지유통기반 확충
- 소규모 시설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되, 사업물량 확보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군단위 또는 2개 읍면 이상) 및 기존시설과의 사업연합, 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의 확보를 전제로 지자체형 시설을 지원
 - 생산자단체 컨소시엄 등 운영체제 및 상품개발, 마케팅계획, 기존시설과의 경합정도 등 엄정한 사전 사업성 진단을 거쳐 지원하고, 준공 후에는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자 확정 후 사업신청 및 착수
- 유희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 제고 촉진 및 산지유통시설간 사업연합 및 계열화 촉진 유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04까지	'05지원	'06예산안	'07이후
사업량(개소)	288	210	7	7	64
사업비(억원)	737,697	282,052	45,692	46,246	363,707
- 국 고	326,200	146,728	15,975	18,014	145,483
- 지방비	205,134	63,983	16,556	15,483	109,112
- 자부담	206,363	71,341	13,161	12,749	109,112

※ 사업량은 신규지원 개소수임, 총사업비는 예산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 경과

- '94년에 수립한 유통개혁 대책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자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추진
- '98년부터 농산물간이집하장의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집하장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지원
- '99년부터 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자를 지자체 및 민간 유통업체까지 확대
- '99년부터 농산물포장센터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사업명칭 변경
- 여러 사업으로 분산 지원하던 산지유통 관련 시설을 2001년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으로 일원화
 -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 간이집하장시설보완사업을 통합
- '05년부터 균특회계사업으로 전환, 지자체별로 예산한도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사업성·규모화·조직화 달성 여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산지유통혁신 모색

2)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출자법인
 - 농안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 및 화훼류를 취급(특용·약용작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며, 임산물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함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 회원농협이 신청한 경우 농협중앙회와 사전 협의(자기자본 비율,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시설설치 적정성 등) 후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전년도 산지유통센터 평가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시행) 하위 5% 이하 사업자는 시설지원 일체 제외
 - * 단, 당해연도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농림부 시행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 외부 전문업체에 의한 경영컨설팅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 조건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고보조 50%, 시·도(시·군)비 50%
 - * 시·도(시·군)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 부담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시·군은 관할내 사업신청 수요가 있거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사전 시·도와 지방비 부담비율에 관한 협의를 완료 한 경우에는 예외
-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규모화 신규시설 20억원, 기존시설 보완은 8억원을 표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원료조달권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할 수 있음.

4)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예시)

- 건축물류 : 집하장·선별장·포장장·사무실·회의실·일반창고·기타 시설 등(1.0백만원), 차압식예냉고(3.5백만원), 저온저장고(2.7백만원), 품질검사실(2.0백만원)
- 선별·포장장비류 : 선별기 및 선별시설,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어, 마늘 박피기, 세척시설 등
- 유통시설장비류 : 수송차량(화물용),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에틸렌가스제거기 등
- 전체사업비 2%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및 감리비 등 사용 가능
 - ※ 시장·군수는 산업자원부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고시 제2004-074호 /'04.7.9)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 대상 품목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 위에서 열거된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선별·포장·유통시설 장비류(2억원 미만)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 균특회계 참조)으로만 지원가능함.
 - ※ 선별·포장·유통시설 장비류 기준단가는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 균특회계 참조) 지원단가에 준함.
 - ※ 신규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6에 의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참고사항>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위의 표준단가를 조정할 수도 있음.
-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예 : 간마늘 관련 기계, 비파괴 당도측정기, 자동선별기·제함기, PC, 오페수처리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시설(기계·장비·설비 등) 중 물류표준화사업 지원대상인 것은 동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함. 다만, 수량단위로 확연하게 구별되고 工率上 독립적인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수량이 동 사업에서 정한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초과수량을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음
- 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설계 및 설비설치에 관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중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공사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5) 지원대상 선정기준(우선 순위)

- 시·도(시·군)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하여야 함.

① 공동마케팅조직

- * 공동마케팅조직 : 산지유통전문조직·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고)

② 산지유통전문조직

- *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조직 여부는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
- ③ 기존 유희 또는 부진 사업장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여 시설보완(확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 ④ 수 개의 읍면 사업연합 또는 시·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지방자치단체형 시설의 설치 및 보완

* 지자체형 운영주체 선정은 공동마케팅조직 또는 산지유통전문조직, 그 외 시장·군수가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직

⑤ ①항내지 ④항에 해당하지 않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업성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5% 사업자 (운영주체 포함), 거점APC(재원 : FTA기금) 사업권역내 신규APC

6) 지원 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하되, 예냉·냉장수송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예냉·냉장수송 권장품목

· 주로 여름철에 수확되는 것으로서 저장성이 적어 선도유지가 어려운 신선과일 및 엽채류 등 (예) 딸기, 토마토, 고랭지배추, 양상추, 양채류, 대파, 썩갓,

복숭아, 포도, 버섯 등

- 예냉·냉장수송 선택품목

· 주로 봄·가을에 수확되는 것으로 선도저하가 비교적 느린 품목

(예) 단감, 배, 사과, 밤, 마늘, 양파, 당근, 가을배추 등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일괄지원의 예외 >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100평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단, 집하·선별·포장장 등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선별·포장·유통시설 장비류(2억원 미만)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 균특회계 참조)으로만 지원가능함.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정한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만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배방법의 특성상 생산량이 소

량이어서 100평 이상의 시설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이 인정하는 때에는 50평 이상 100평 미만도 가능

< 시설보완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 >

- 정부지원 또는 생산자단체 보유(자체투자 또는 지자체 투자)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설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규모 기준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200평 이상인 경우
 - 유통시설 : 저온유통기반시설, 집하·선별·포장장 등

아. 행정 사항

1)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 등 산지유통 관련시설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림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 조건을 명기)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2006. 4. 25 조례 제186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현대화된 유통시설에서 집하·선별·포장·저장하기 위하여 완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식량작물·원예·과수·화훼 등)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
2.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3.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기타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경영방법) ①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에게 위탁경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센터 경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 ①유통센터는 완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유통센터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수탁자가 유통센터 시설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운영자는 시설물관리·농산물 수집·집하·판매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출하농가 등과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①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유통센터관리자를 둔다.

②유통센터관리자는 친환경농업축산과 소속직원중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센터의 시설관리
2. 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3. 소속직원 지휘감독(직접운영)
4. 월말·연말 결산보고 및 회계관리 등(직접 운영)

제8조(감사) 군수는 유통센터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을 두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 원 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3. 위 원 :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 1인,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재정관리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공원사업소장, 농협중앙회완주군지부차장, 수탁경영대표자(직접경영은 제외), 농업인단체 대표 1인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산유통담당으로 한다.

제10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방법·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저장품목의 선정 및 저자수수료에 관한 사항(직접운영)
4. 유통센터 운영예산 편성 및 결산심의(직접운영)
5.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위 탁 경 영

제13조(신청 및 허가) ①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순위 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 인
3. 기타 농업관련단체

④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수탁자가 유통센터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 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 허가한다.

⑥군수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 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

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①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사용료로 정하고, 전년도 매출액을 익년도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한다.

②사용요율과 위탁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최초년도 사용료는 시설물의 투자액과 기계장비 구입액의 합산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6조(사용료 징수 및 독촉 등) ①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세입 징수 결의하고,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입독촉고지서를 14일의 기간을 주어 재고지 하고, 농협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③임대계약일로부터 3월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한 사항을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한다.

제17조(사용료 반환)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관리 및 손해배상) ①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통센터 시설물의 훼손 또는 기계장비류를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유통센터관리자는 위탁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 2회 이상 운영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직 접 운 영

제21조(조직) 제7조의 유통센터관리자를 포함한 유통센터의 직접경영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복무)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예산) ①유통센터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수수료 및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유통센터관리자는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일계) 유통센터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제25조(결산) 유통센터의 결산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 1월말까지, 매월 운영현황은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당일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칩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